[별지 제10호의 2서식]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길 221(하동) T.031-214-5599, F.031-214-5597

위 임 장

수 임 인	성 명	
	주 소	
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**공증인 황순헌 사무소**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(어음·수표의 공증 등)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 다만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행위를 허락함.

액 면	금 원정 (₩)		
발 행 일		발 행 지	
지급기일		발 행 인	
지 급 지		수 취 인	
지급장소			

20 년 월 일

위 임 인	성 명 주 소	(인감날인)
위 임 인	성 명 주 소	(인감날인)
위 임 인	성 명 주 소	(인감날인)

*인감증명서 (3개월 이내) 첨부

약 속 어 음

_____ 귀하

일금 _____ 원정 ₩_____

지급기일 : 년 월 일 지급지 :
지급장소 : 발행지 :

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.

발행일 20 년 월 일

발행인 주소 성명 (인감날인)

발행인 주소 성명 (인감날인)

발행인 주소 성명 (인감날인)